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3조 [보호구의 관리]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3조(보호구의 관리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**상시 점검**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**수리**하거나 다른 것으로 **교환**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**청결**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**청결**을 유지하는 안전화, 안전모,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**교환**할 수 있도록 **충분한 양**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